

전주지방법원 2018. 10. 31 선고 2017가단2798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고(선정당사자) B

변론 종결 2018. 10. 17.

판결 선고 2018. 10. 31.

주 문

1. 원고에게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은 전북 완주군 C 잡종지 660㎡, D 잡종지 1,000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3, 15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12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건물 85㎡, 같은 도면 표시 30, 33, 34, 35, 9, 10, 11, 25, 26, 27, 28, 29,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579㎡, 같은 도면 표시 16, 17, 18, 15, 13,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2㎡, 같은 도면 표시 31, 32, 33, 30,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26㎡를 각 철거하고, 전북 완주군 C 잡종지 660㎡, D 잡종지 1,000㎡를 각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E의 소유였던 전북 완주군 C 잡종지 660㎡, D 잡종지 1,000㎡(이하 위 2필의 토지를 통틀어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전주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1. 12. 27. 경락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. 12.29. 접수 제84213호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E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비롯한 단층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, 그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이 별지 도면 표시13, 15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12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85㎡, 같은 도면 표시 30, 33, 34, 35, 9, 10, 11, 25,26, 27, 28, 29,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579㎡, 같은 도면 표시 16, 17, 18, 15, 13,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2㎡, 같은 도면 표시 31, 32, 33, 30, 3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26㎡[이하 위 (가),(나), (다), (라) 부분 건물을 통틀어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]이며, E는 이 사건 건물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.

다. 원고는 2012. 5. 3.경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4857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전북 완주군 D 잡종지 1,000㎡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3. 2. 21. "E는 원고에게 360,000원과 2012. 5. 1.부터 전북 완주군 D 잡종지 1,000㎡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E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3. 4. 12. 그대로

확정되었다.

라. 한편, E가 2013. 9. 10.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선정자 G, 자녀인 선정자 H, I,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(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'피고 등'이라 한다), 원고는 현재까지 E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 등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등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·사용하고 있으므로,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[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(민법 제287조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 등이 지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있으므로,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등의 법정지상권은 원고의 지상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등에게 송달된 무렵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.

판사 최수진

